

축산물 위생 · 안전관리 정책방향

- I. 들어 가며
- II. 현황
 - 가. 축산물 안전성관리 여건변화
 - 나. 축산물 안전관리 체계
- III. 정책방향(안)
 - 1. 기본 방향
 - 2. 단계별 위생관리대책
 - 사육단계
 - 도축단계
 - 가공단계
 - 유통 · 운반 · 보관 단계
 - 판매 · 소비 단계
- IV. 맺음말

이 상 진

- 경상대학교 수의과대학 졸업
- 영국 에딘버러대학교 수의과대학 열대 수의학과 석사과정 수료
- 농림부 통상협력과, 가축위생과, 축산물 유통과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축산물규격과
- 현 농림부 축산물위생과 사무관

축산물 위생·안전관리 정책방향

I. 들어 가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많은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9년 전에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는 우리의 식탁을 많이 변화시켰고, 알게 모르게 우리 축산업은 변모가 거듭되고 있다. 호당 사육두수의 증가와 사육기술, 소비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알았고 생산도 소비자들의 구미에 맞게 맞춤 축산물 생산을 하고 있다.

또한, 축산물의 수입개방에 살아 남을 수 유일한 길은 우리 소비자들이 우리축산물을 많이 먹고 즐기도록 하는 것이다. 사실, 우리 소비의 패턴을 보면 수입축산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을 넘는다는 사실은 우리 축산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축산물에 대한 품질의 향상과 아울러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의 생산과 공급으로 소비자들이 우리 축산물을 많이 소비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일 것이다. 이에 품질의 향상과 함께 가축의 사육단계에서부터 식탁까지의 일관된 관리가 축산물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생산하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지난 '97년 12월 “축산물위생처리법”을 “축산물가공처리법”으로 개정하여 일관된 관리가 되도록 하였다. 현재 농림부는 사육단계부터 식탁까지의 일관된 관리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농림부가 그간에 착실히 수행하였던 일관된 정책에 추가하여 앞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축산물의 위생·안전성 제고 종합대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II. 현황

가. 여건 변화

□ 대내적 측면

- 소득 증대로 외식 및 가공식품의 소비가 크게 증가하고 화학적·생물학적 식품위해요소 증대.
 - 식중독 환자수가 1995년 1,584명에서 2000년 7,269명으로 크게 증가
 - 이중 학교급식 등 집단급식소 발생환자 비중이 78%로 대형화 추세
 - 대량생산체계, 식품유통과정의 복잡화, 산업화에 따른 환경오염, 식품의 교역증가에 의한 위해 축산물 수입가능성 증대 등
- 국외에서 O-157 발생, 광우병 파동, 구제역·돼지콜레라 발생으로 소비자의 축산물안전성에 대한 인식이 더욱 고조.
 - 소비자가 육류 구매시 안전성(40%), 맛(19%) 등을 고려

□ 대외적 측면

- WTO체제 출범으로 식품교역시는 국제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위생 및 동식물검역협정(SPS)은 교역 원활화를 위해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준과 규격을 적용토록 하고,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는 농·축산물 및 식품의 교역에 HACCP를 채택하여 적용토록 권고
- 주요 선진국의 축산물 소비패턴이 「고품질·안전축산물」로 변화

나. 안전관리 체계

□ 일반식품 안전관리체계

- 우리나라는 다원적인 식품안전관리체계로서 농축산물의 안전성 관리는 농림부와 보건복지부(식약청)에서 담당
- 기본적으로 생산단계는 농림부, 유통단계는 보건복지부에서 관할

□ 축산물 안전관리체계

- 축산물은 가축의 사육단계에서 식탁까지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거 농림부에서 일괄 관리. 다만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축산물은 식품위생법에 의해 관리.
- 1997년 축산물위생처리법이 축산물가공처리법으로 개정되면서 가공·운반·판매업이 농림부로 환원

<축산물위생관리 일원화에 따른 효과>

- 가축의 사육·도축·가공·유통판매 등 모든 단계에서 축산물 위생관리 전문가에 의한 일관성 있는 위생관리로
- 축산식품의 위생·안전성문제 발생시 역추적하여 축산식품과 가축방역을 연계하여 위해원인을 규명한 후 제거하는 등 가축전염병예방 및 축산식품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과학적인 위생·안전관리체계의 구축 계기를 마련하여 소비자 신뢰제고

□ 축산물가공처리법의 주요 내용

- 적용대상 : 식육, 원유, 식용란,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
- 위생관리기준(SSOP),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 등 선진위생관리제도 규정
- 가축 및 축산물의 세부검사기준 규정
- 영업의 허가 및 신고대상 업종, 영업자준수사항 등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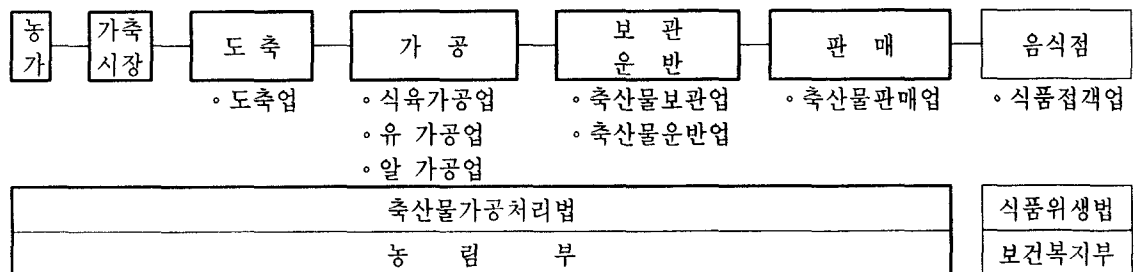
□ 축산물가공처리법상 관리대상 업종

- 허가 대상 :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유가공업 및 알가공업), 축산물보관업
- 신고 대상 : 축산물운반업,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우유류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및 수입판매업)

도축장			집유장	축산물가공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축산물판매업				
계	포유류	가금류		계	식육	유	알			계	식육	식육부산물전문	수입축산물	우유류
174	113	61	61	2,304	2,070	153	81	143	784	54,220	47,568	860	1,002	4,7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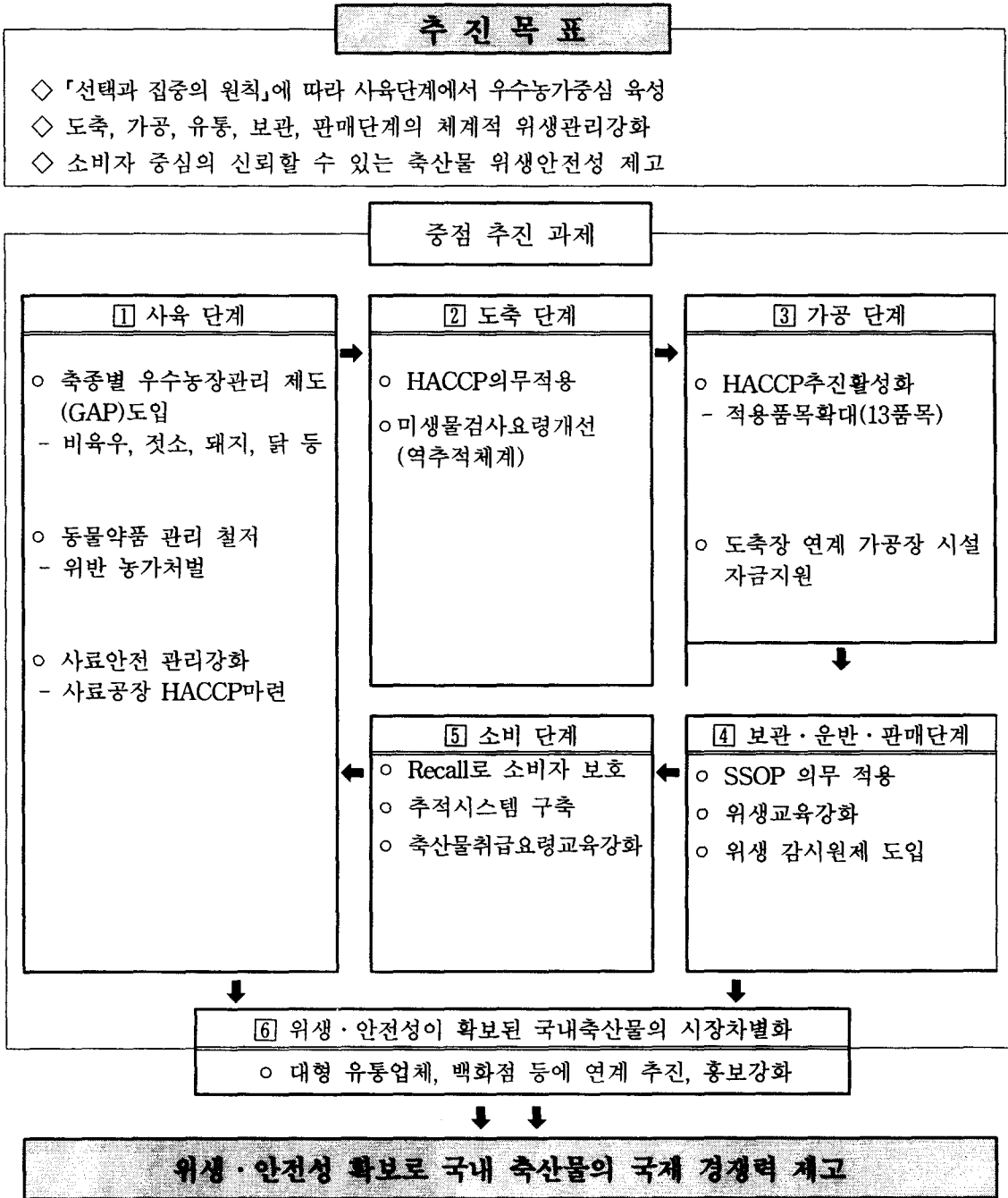
※ 총 관리대상('02.12) : 6개업종, 57,686개 업체

<축산물 안전관리 체계도>



Ⅲ. 정책 방향(안)

1. 기본 방향



2. 단계별 위생관리 대책(안)

사육 단계

가. 그간 업무추진내용과 평가

- 그간 사육단계에 축산업의 구조조정으로 호당 사육두수의 증가 등으로 사육여건이 좋아지기는 하였으나,
 - 사육단계부터의 위생관리, 동물복지, 축사구조 등의 개선을 위한 총체적인 개념도입이 되어 있지 않아 안전축산물의 생산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 축종별 GAP의 단계별 도입을 통한 우리축산의 한차원 높은 발전(Upgrade)과 유도 필요
- ※ FAO, CODEX 등에서 사육단계의 위생관리 지침(GAP)을 마련, 회원국에 권고 증으로 앞으로 적용국가에서 수출입규제 등 조치가 예견됨
- 사료의 안전관리에 있어 국내·수입산 사료의 품질검사, 유해 잔류물질 허용기준설정(농약 17종, 동물용의약품 59종)등 제도적인 측면(hard ware)에서 상당 수준 구축이 되었으나,
 - 사료에 대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의 실행지침(soft ware) 도입필요
- 동물약품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그간에 항생물질 등 65개 물질에 대한 안전사용기준설정, 휴약기준준수, 후기사료급여, 10대 안전사용기준 등 제도적 장치, 홍보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였으나,
 - 아직까지 유해물질이 잔류되는 등의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 있음

나. 추진 대책(안)

< 기 본 방 향 >

- ◇ 비육우, 젖소, 돼지, 닭 등 축종별 GAP(우수농장관리기준)제도도입
 - 농장등록제(Hard ware), 우수농장관리기준(Soft ware)
- ◇ 사료에 대한 HACCP/GMP(우수제조기준)기준마련 및 시행
- ◇ 동물약품 오·남용관리 및 잔류방지 이행강화

<세부시행계획(안)>

가. 축종별 GAP(우수농장관리기준)제도도입 : 단계별 추진

< 1 단계 > : '04-계속

(1) 축종별 (비육우, 젖소, 돼지, 닭)세부GAP지침 확정('04년중)

- 사양관리 : 축사위치선정, 축종별 특성에 맞는 사양관리방법, 쾌적한 사육환경(분뇨처리), 가축밀사, 가축관리방법 등
- 위생관리 및 동물복지 : 정기검진, 동물약품사용, 살모넬라균 등 미생물 오염방지, All-in & All-out방법, 동물복지를 고려한 사양관리(스트레스 감소 및 제거 프로그램 등), 청소 및 소독방법, 방충·방서 대책 등
- 관리 자문 : 동물질병·축산물위생, 동물약품 사용, 수의사 자문(Consultation), 체표면 분변 오염제거 등 가축위생관리 등

- 기록유지 : 가축입식·출하, 동물약품 구매·사용, 동물질병발생이력, 소독실시내용, 출입자 명부, 사양관리(분만 등) 등에 대한 기록유지
- ※ 우수농장관리(GAP)내용의 심사기준 설정 및 점검표 작성
- (2) 우수농장관리지침의 보급과 교육·홍보강화('04년~계속)
 - 축종별 GAP 관리지침과 세부심사기준을 책자 발간
 - 우수농장관리(GAP)제도도입관련, 축종별 농가, 시도, 농협(지역축협), 협회관계관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 교육
- (3) GAP지침 및 심사기준의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반영

< 2 단계 > : '05~'13년

- (1) 우수농장관리(GAP)내용인정 ('05년 시범사업, '06년부터 전면적용)
 - 축종별 소관협회의 추천에 의한, 심사위원회(민간 별도기구)가 심의
 -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기준, 심사위원 선정, GAP 관리사무국 설치검토
 - '05년 시범사업(축종별 10개 농장)실시, '06 일반 농가확대

< 3 단계 > : '06이후

- 관리상태가 우수한 것으로 지정된 농장에 대하여 정부정책자금 우선 지원 및 생산축산물의 차별화 등 인센티브 부여
 - 정부정책자금 지원, 친환경 직불금 지급 및 시장차별화 세부방안은 추후검토
- 나. 사료에 대한 HACCP/GMP(우수제조관리)기준마련·시행
 - '01~'03년간 실시한 사료 제조 시 GMP 및 HACCP적용용역
 - 사료 GMP 및 HACCP 적용고시 제정('04년 중), 인증기관 선정 등
- 다. 동물약품 오·남용관리 및 잔류방지 이행강화
 - 동물약품 오·남용관리를 위한 적정사용 유도방안마련
 - 동물용 의약품의 안전사용을 위한 교육·홍보강화
 - 휴약기간 미준수 농가(잔류확인)의 공개 및 벌칙강화
 - ※ (현행) 안전사용기준 위반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약사법 제79조)

도 축 단 계

가. 그간 업무추진내용과 평가

- 도축단계에서 수행하는 생체검사, 해체검사를 위한 도축검사관이 파견되어 있으나, 인력의 태 부족
 - 축산물가공처리법상 축산물검사보조원 : 301명
- 그간에 HACCP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전체도축물량의 약 80%수준이 HACCP운용 작업장에서 생산·공급되나,
 - 아직까지 미적용 도축장이 있어 축산물 안전성 확보에 있어 장애요인으로 작용
- '03.7.1 소, 돼지, 닭 도축장에 대한 HACCP전면 시행됨에 따라 HACCP운용 도축장내 검사실 협실의 대장균 검사소홀우려
 - 균 배양기, 재료비 등 검사비용의 과다소요
- "식육중 미생물검사요령"에 의거 도축장에 대한 미생물 검사를실시하여 그 동안 위생수준향상

에는 많아 기여하였으나

- HACCP제도의 전면시행으로 동 검사요령개정 등을 통한 단계별 미생물검사체계의로의 전환이 필요

나. 추진 대책(안)

< 기 본 방 향 >

- ◇ 도축검사관 및 검사보조원 운영방법 등 제도개선
- ◇ 역추적 체제구축을 위한 “식육중미생물검사요령”개정
- ◇ 도축장 HACCP제도의 조기정착과 사후관리강화

<세부시행계획(안)>

가. 검사보조원 및 도축검사관 운영방법 등 제도개선

- 일정자격을 갖춘 검사보조원을 도축규모에 따라 배치
- 보조원 증원에 따른 년차별 소요 인건비 등 재원확보 및 관리사무국 설치
- 도축검사보조원에 대한 도축검사기법 교육·훈련
- 도축검사관을 도축규모에 따라 차등배치

나. 역추적 체제구축을 위한 “식육중미생물검사요령”개정

- 현행 도축장에서 생산된 지육중심검사체제를 사육부터 유통까지의 다단계 검사체제로 전환 (식육중미생물검사요령 개정)
 - 단계별 미생물 검출시, 역추적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체제로 전환
 - 미생물 검사실시내용의 점검방안강구 (Blind Test 및 교차검사 실시 등)

다. 도축장 HACCP제도의 조기정착과 사후관리강화

- 도축장 HACCP 조기정착을 위해, 미적용·운용 도축장 영업자에 대한 교육 및 HACCP적용 작업장 생산축산물을 군납, 대형유통업체, 학교급식 등에서 사용토록 홍보강화
- HACCP 미적용 도축장에 대해서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 과징금부과 등) 및 적용토록 행정지도강화
- HACCP 적용도축장에 대한 정기점검을 통해, 이행여부 등 지속적인 감독 (시도간 교차점검, 합동점검 등)

가 공 단 계

가. 그간 업무추진내용과 평가

- 축산물가공장에 대한 HACCP 적용으로 축산물 가공품 생산시 재오염 기회의 차단문제는 많이 개선
 - 아직까지 가공장 HACCP 적용확대를 통한 위생상 문제해소필요
 - HACCP 적용 품목의 확대 필요

- 유해물질의 재오염 기회차단을 위한 방안으로 도축장과 가공장이 연계된 건물에 위치하여 지육유통체제에서 정육유통체제로의 전환으로 위생수준이 많이 향상되었으나,
 - 아직까지 많은 식육이 지육상태로 원거리 가공장 또는 식육판매업소로 운반됨에 따라 유해물질의 재오염 기회 상존
- 축산물가공장(식육, 우유, 알)에 대한 SSOP(위생관리기준)이 마련되는 등 위생관리상의 제도적인 측면은 문제가 없으나,
 - 가공장에서의 SSOP 준수여부, 자가품질관리 등 위생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감시가 요구됨
- 축산물 가공품의 자가검사를 형식적으로 수행우려
 - 축산물가공처리법상 의무검사내용을 소홀히 할 우려가 있음

나. 추진 대책(안)

< 기 본 방 향 >

- ◇ 가공장 HACCP 적용업체와 미적용업체간 차별화 추진
- ◇ 도축장과 연계한 가공장 설치 지원 (자금융자 확대 등)
- ◇ 축산물가공장에 대한 SSOP(위생관리기준)적용 감시강화
- ◇ 축산물가공품 자가검사체제 감독강화

<세부시행계획(안)>

가. 가공장 HACCP 적용업체와 미 적용 업체간 차별화 추진

- 축산물 가공장에 대한 HACCP 조기정착을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추진
 - 영업자 준수사항 감시, 미생물 등 유해성 물질검사강화
- HACCP 적용 가공장에서 생산된 축산물가공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차별화 유도
- 축산물 가공장에 대한 HACCP 적용방법 등 교육강화를 통한 전체 가공장에 조기정착유도

나. 도축장과 연계한 가공장 설치 지원 (자금융자 확대 등)

- 가공장을 도축장 구내설치 활성화를 통한 정육유통 전진기지로의 역할확립
 - 가공장 설치 자금지원방안 마련 및 활성화 유도로 유해물질 재오염 방지유도

다. 축산물가공장에 대한 SSOP(위생관리기준)적용 감시강화

- 권고사항으로 규정한 SSOP준수를 위한 교육강화 및 감시강화방안마련을 통한 조기정착유도

라. 축산물 가공품의 영업자 자가검사내용 감독강화

- 축산물 위생검사기관에 대한 Blind test 및 시설점검

유통·운반·보관단계

가. 그간 업무추진내용과 평가

- '02.12월 축산물 보관·운반·판매업에 대한 업종별 “SSOP 운용지침 및 적용모델”을 마련·공

- 급하고 이의 활용을 적극 유도중이나
- 실제 운영면에서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SSOP을 지키지 않는 등 위생관리에 헛점 노출
 - 축산물 운반차량의 보냉시설 설치의무화로 유통상 많은 발전을 가져왔으나,
 - HACCP적용 도축장에서 지육반출시 상차 시설을 이용하지 않거나 현수를 하지 않고 운반함에 따라 유해물질의 오염가능성 상존
 - 운반도중에도 차량의 냉장·냉동시설의 가동하지 않거나 및 청결상태가 양호하지 않아 오염 기회가 많음(Cold Chain 미준수)
 - 유통중인 축산물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로 잔류물질·병원성미생물 모니터링 및 유통축산물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왔으나,
 - 지자체와 검역원과 불합격율이 현격한 차이가 나는 등 운영면에서 문제점이 노출됨
 - “유해축산물의 회수절차등에 관한 규칙”(농림부령, '00.3.17)을 제정하여 부정·불량축산물에 대한 회수체계를 확립하고, 축산물위생위험긴급대처요령(SOP)수립·시행 등 제도적 측면은 완비되었으나,
 - 실제 운영면에서 회수율이 부진하는 등 문제점 도출(특히, 수입축산물에 대한 회수시 보상주체문제 대두)

나. 추진 대책(안)

< 기 본 방 향 >

- ◇ 축산물 운반, 보관 등 유통단계의 SSOP 준수 추진
- ◇ 축산물 운반차량에 대한 영업자 준수사항여부 감독강화
- ◇ 잔류물질 및 미생물 검사내용 지도·감독강화
- ◇ 위해축산물 리콜시스템(Recall) 강화
- ◇ 축산물위생감시원 및 축산물명예감시원 제도도입
- ◇ 수입축산물 주요위해상황별 표준대처요령(SOP)보완추진

<세부시행계획(안)>

- 가. 축산물 운반, 보관 등 유통단계의 SSOP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감독 강화
- “축산물 유통단계 위생관리기준(SSOP)운용지침('02.12)의 준수를 위한 교육홍보 및 지도감독 강화
 - 축산물운반업, 축산물보관업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대대적 교육
 - 운반업, 보관업에 대한 위생기준운용지침 이행여부 지도감독강화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1조 2항, 시행규칙 제51조 2항 별표 13의 “축산물 운반업, 보관업 영업자 및 종업원 지켜야할 준수사항”의 이행여부에 대한 상시감독이 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 실시

나. 운반·보관·판매 등 유통단계에서의 Cold Chain 의무준수 감독강화

- 운반 차량의 냉장운송, 보관장의 냉장·냉동 상태, 판매점의 적정온도 유지 감독강화

다. 잔류물질 및 미생물 검사교육 및 검사내용분석·지도감독강화

- 잔류물질 및 미생물 검사의 정확도 확보를 위해서 축산물위생검사기관 및 HACCP적용도축장·가공장에 대한 Blind test 정례화
 - 위반기관에 대한 지도 강화 및 연속 위반시 퇴출방안 마련
- 잔류물질 및 미생물 검사의 정확도를 위해 축산물위생검사기관 및 HACCP적용도축장·가공장 검사원 정기교육 실시방안마련
 - 검역원 교육프로그램 구축(4회 정기교육, 실수요자 교육비 부담) 또는 연수부 미생물, 잔류물질반 과정확대 추진
- 잔류물질 및 미생물 검사기준 위반농가에 대한 처분강화
 - 위반농가 및 HACCP적용 도축장, 가공장에 대한 특별교육실시 등 강화방안마련 및 처분

라. 위해축산물 리콜시스템(Recall) 강화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6조” 및 “위해축산물의회수절차등에관한규칙(농림부령)”에 의한 위해축산물 Recall 기준 강화 (측가법 개정, '03년 하반기)
 - 유통단계에서 위해축산물 확인시 제조업체의 자발적 회수 강화
 - 자발적 회수의 경우 중앙일간지 등 회수사실 공포 의무화
 - 자발적 회수 미시행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등 위생체제 강화
- 축산품목별, 위해종류별 위험도 평가후 위생사고 발생시 회수조치(Recall) 수준 결정시행
 - 미국도 위해도를 3단계로 구분하여 Recall 범위, 수준 결정
- 위해축산물 회수에 적극적인 업체에 대한 우대조치 강구 시행

마. 축산물위생감시원 및 축산물명예감시원제도 도입

- 유통중인 부정축산물에 대한 단속강화를 위해 축산물위생감시원 및 축산물명예감시원제도를 법적으로 도입
 - 축산물작업장에 대한 출입·수거·검사권한을 기존 검사관에서 관계공무원으로 확대
 - 축산물명예감시원제도의 확대적용으로 민간자율감시기능 강화

바. 수입축산물 주요위해상황별 표준대처요령(SOP)보완추진

- 위해 상황 발생시 상황별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안별로 표준대처요령(SOP)마련 (현 SOP 보완)
 - 광우병, 탄저병 등 인수공통전염병, 니트로푸란, 다이옥신 등 환경유래물질, CFZ 등 농약, 항생제 등의 검출시

판매·소비 단계

가. 그간 업무추진내용과 평가

- 판매단계의 유통개선을 통해서 식육판매업소 등에 시설현대화, 위생개념의 정립, 위생수준의 향상은 많이 되었으나,
 - 아직까지 영업자 준수사항 및 “축산물 유통단계 위생관리기준(SSOP)운용지침 ('02.12)”을 미 준수 또는 이행하는 업소가 있어 최종위생관리 문제상존
 - 식육판매업소에 대한 거래기록확인 등 위생감시강화 필요
- 식육에 대한 위생·품질관리가 예전에 비하여 많이 발전되고 향상되었으나,

- 정확한 식육관리와 위생수준의 향상을 위해서는 식육처리기능사 자격을 갖춘 자만이 식육 판매업 및 축산물 수입판매업을 영위하도록 제도개선필요
- 수입축산물에 대한 유통관리를 시도에서 함에 따라, 위해사건 발생시 회수 및 사후관리에 있어 문제점 노출
 - 금번의 캐나다산 광우병 발생시 축산물 수입판매업 영업자가 유통시킨 물량의 회수 및 관리상 문제도출
- 소비단계에 축산물 취급 및 관리요령 등에 대하여 집중적인 교육·홍보를 강화하였으나,
 - 아직까지 최종단계에서 취급상 유해요소에 노출되는 등 사례로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함
 - HACCP 적용제품 우수축산식품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함
- 생산·유통단계별 기록유지규정이 있어 축산물위생사고 발생시 기계적 방법에 의한 역추적이 가능하나,
 - 각 단계별 연결성이 미흡하고, 가축사육단계에서 동물이력제도 미흡 등으로 신속·정확한 역추적이 어려움

나. 추진 대책(안)

< 기 본 방 향 >

- ◇ 판매단계에서 “영업자 준수사항” 및 “축산물 판매 단계 위생관리 (SSOP)운용지침 이행 철저지도 감독강화
- ◇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신고를 검역원으로 전환추진
- ◇ 소비자에 “축산물 취급 및 관리요령”등 교육·홍보강화
- ◇ 역추적(Traceability)기능구축을 통한 위생감시강화

<세부시행계획(안)>

가. 식육판매업소의 위생관리(SSOP)운용 지침 이행감독강화

- 정기적으로 식육판매업소에 대한 감시강화를 실시하여 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영업자 준수사항 및 식육판매업소의 위생관리 SSOP준수를 위반한 업소는 행정처분 조치
- 축산물판매업소에 대한 감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시도, 검역원)
 - 단계적 감시활동강화 추진으로 점진적인 위생향상 발전 유도

나.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신고의 검역원으로 전환 등 제도개선

-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신고를 검역원으로 전환추진(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 개정)
 - (현행) 시·도(시·군·구)에서 축산물수입판매업 신고관리
(개선) 중앙(검역원)으로 축산물수입판매업 신고관리
 - ※식품수입판매업 : 시·군·구에서 식약청으로 이관('03, 식품위생법)
- 축산물수입판매업 판매관련 기록보관 제도개선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
 - 현재,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자는 판매관련 기록을 2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록사항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음
 - 판매관련 기록, 유통·판매 경로가 파악될 수 있도록 기록사항 구체화

다. 소비자에 “축산물 취급 및 관리요령”등 교육·홍보강화

- 소비자에 대한 축산물 위생관리방법 등의 정기적 순회교육실시
- 소비자에게 축산물의 특성 및 취급요령, 조리방법등등에 대한 홍보책자, 포스터, 리후렛 배포
 - 대중매체를 통한 축산물 소비홍보 추진(TV,신문, 방송 등)

라. 역추적(Traceability)기능구축을 통한 위생감시강화

- “farm to table”에서의 생산·유통 이력시스템 구축
 - 축산물 생산이력, 농장등록, 출하동물이동증명, 소·돼지 개체 확인 (animal identification), 식육 거래기록 의무제와 연계방안
 - 생산·유통단계별로 조회번호에 따라 식별되고, 각 단계의 이력에 관한 정보가 순차적으로 누적됨에 따라 어느 단계에서도 축산물이력에 관한 정보의 접근이 가능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추적시스템 법적 근거 마련(2004년)
 - 원료동물사육, 도축 및 축산물 가공·보관·운반·판매과정별 추적

V. 맺음말

농장에서 식탁까지(Farm To Table)축산물의 위생·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HACCP 등은 도축장뿐만 아니라 농장·가공·유통단계가 상호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실효성이 있을 것인바, 양축가 및 도축·가공·유통업자 등의 노력뿐만 아니라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을 선택하는 소비자의 지혜도 필요하다

또한 축산물의 위생관리와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은 농장·도축장·가공장 등의 현장에서 가축질병의 이상유무 및 유해물질잔류 등에 대한 검사를 철저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가축생산 현장인 축산농가에 제공하여 방역과 위생관리에 활용토록 하게 함은 물론, 축산물작업장의 위생관리 지도·감독을 통한 안전축산물 생산·공급으로 소비자에 대한 신뢰확보가 중요한 시점이다.

아울러, 원유 및 유가공품에 대해서도 착유가축의 검사, 집유단계의 검사, 유가공품 제조과정상의 위생문제, 유통단계까지의 관리까지 전단계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한다.

따라서, 축산물에 대한 위생·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종사하고 노력하는 우리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현재의 노력을 배가하여 우리축산물의 소비확대를 통한 축산업의 발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역할이 되는데 일조를 하여야 할 것이다

< 별첨 >

